타일(Tile)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12장 작업장, 제2편 제1장 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,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,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타일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, 전도, 베임, 직업성 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 구조체 내·외부의 바닥, 벽 및 천정 등의 타일공사에 적용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타일공사(Tiling, Tile works)"란 각종 타일붙이기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 - (나) "타일(Tile)"이란 점토나 암석의 분말(또는 도토, 자토)을 성형 소성하여 만든 얇은 파형의 것을 말하고. 보통 타일은 도자기 타일을 말한다.
 - (다) "타일의 종류"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.
 - ① 원재료의 질(質)에 의한 분류
 - ⑦ 도기질
 - G 자기질
 - 따 반자기질 등